

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80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2. 22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안산시 마이스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,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조)

나.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
-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다.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
-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전문기관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라.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(안 제5조~제7조)

-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마. 마이스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
-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,
-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,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바.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(안 제9조~제10조)

-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사. 마이스산업 유치 포상금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)

-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관내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·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그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정조례안 : 붙임 1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 2

-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
- 「전시산업 발전법」 제2조, 제21조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- 비용추계서

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6. 1. 22.~ 2. 11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 4

- 방침결정문

< 불임 1 >

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마이스(MICE)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안산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“마이스(MICE)산업” (이하 “마이스산업”이라 한다) 이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관광산업으로 회의(Meeting), 포상관광 (Incentive Travel), 컨벤션(Convention), 전시회 · 이벤트(Exhibition&Event)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회의(Meeting)”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, 정부 기관,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.
 2. “포상관광(Incentive Travel)”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 여행을 말한다.
 3. “컨벤션(Convention)”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(Meeting)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.
 4. “전시회(Exhibition)”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 · 홍보,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, 무역상담회, 박람회 등을 말한다.
 5. “이벤트(Event)”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, 축제,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.
-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육성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1.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
2.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
3.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4.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
5.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6.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
7.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·발굴 또는 개최 지원
2.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
3.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
4.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
5.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기관, 단체,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협의회 설치 등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
2.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
3.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
4.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
5. 마이스산업 육성 및 전담기구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, 대부해양관광본부장, 산업지원본부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안산시의회 의원
 2.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
 3.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·협회·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
 4.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
 5.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
-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⑥ 시장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.
-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협의회 운영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협의회의 존속기한)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8조(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1조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8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위탁의 해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을 위반한 때
2.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제11조(마이스산업 유치 포상금)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안산시 관내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·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그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안산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투자유치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투자유치과 김형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
	담당자 성명·전화	윤정환 (행정 2351)

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80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. 3. 10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회

□ 수정이유

- 마이스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을 축소함.
- 법령에 설치근거가 없는 전담기구 설치조항 및 중복조항을 삭제함.

□ 주요골자

- 안산시 출자.출연기관,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기관 등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2항)
- 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, 사무의 위탁, 위탁 해지 조항을 삭제함.
(안 제8조~제10조 삭제)

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**

안 제4조제2항 중 “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기관, 단체, 대학 등과” 를 “안산시 출자출연기관,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기관 등(이하 “기관 등” 이라 한다)과”로 하며, “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” 를 “추진하거나, 사무의 일부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에” 를 “시장은 제2항에”로 한다.

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.

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를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관련 전문기관, 단체,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)</p> <p>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안 산시 출자·출연기관,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기관 등(이하 “기관 등”이라 한다)과 ----- 추진 하거나, 사무의 일부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에 ----- ----- -----</p>
<p><u>제8조~제10조 (생략)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제11조~제12조 (생 략)</u></p>	<p><u>제8조~제9조 (안 제11조~제12조와 같음)</u></p>